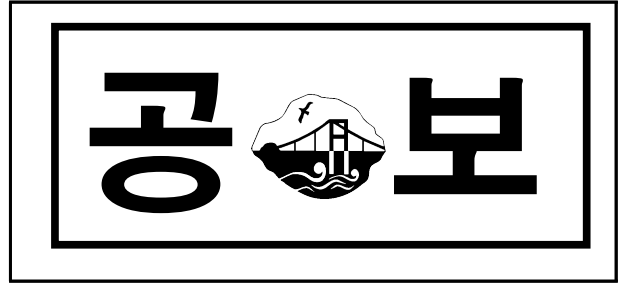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61호 2023. 12. 5.(화)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709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1
남해군 조례 제2710호 남해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5
남해군 조례 제2711호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8
남해군 조례 제2712호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남해군 조례 제2713호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7
남해군 조례 제2714호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9
남해군 조례 제2715호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남해군 조례 제2716호 남해군 희망울타리 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25
남해군 조례 제2717호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남해군 조례 제2718호 남해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7
남해군 조례 제2719호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	29
남해군 조례 제2720호 남해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34
남해군 조례 제2721호 남해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남해군 조례 제2722호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8

규 칙

남해군의회 규칙 제43호 남해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40
---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3-147호 남해군관리계획(남해대학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43
남해군 고시 제2023-15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46
남해군 고시 제2023-152호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	47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3-1492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50
남해군 공고 제2023-1498호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 도로, 도시계획도로 소로2-16, 19호 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열람 공고	53
남해군 공고 제2023-1511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56
남해군 공고 제2023-1512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58
남해군 공고 제2023-1513호 국도19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60
남해군 공고 제2023-1542호 공시송달 공고	63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조정실(860-3044, 행정 3044)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709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12월 5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전략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군수는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남해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한 경우 남해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개정하려는 조례안을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군수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해군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남해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경우 군수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남해군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남해군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남해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제8조(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거나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둔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소관 부서장과 환경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남해군의회 의원
2.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교육계, 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의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710호

남해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12월 5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남해군민과 공무원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남해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의 예산(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낭비신고, 시정·감사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사례
3. 군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군수는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조(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이상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남해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례집을 공개할 경우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③ 공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에 따라 남해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 등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 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고센터에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제5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제안자 등에게 연장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① 군수는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하여 남해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등) ① 군수는 제안 등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8조제1항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남해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예산성과금의 지급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711호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12월 5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로서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 2. “부실시공”이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아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 3.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계약된 공사의 감리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 4. “하자”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목적물의 사용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점검, 부실측정,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부실시공신고센터 설치) ① 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남해군 부실시공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장은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부실시공 신고·접수) ① 군수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부실시공 신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는 착공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부실시공 신고처리) ① 센터의 장은 제5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실시공 신고사항을 통보받으면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실정도의 측정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별점관리기준 제5호의 별점 측정기준을 적용한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 및 발주부서 장의 의견을 들어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지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사시간 등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 자료를 보관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한 경우 조사내용 및 의견을 첨부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부실시공 여부 판정에 관한 사항
- 2. 부실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시책 및 공법의 개발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제2호의 부실시공 정도에 따른 등급 결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1등급 : 주요 구조부 부실로 붕괴위험이 있어 시급히 철거 재시공 하여야 하는 경우
 - 2. 2등급 : 주요 구조부 부실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3. 3등급 :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철거 재시공 하여야 하는 경우
 - 4. 4등급 :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③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주요 구조부”란 영 별표 8 제1호 라목에 따른 구조부를 말한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부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4명 이하로 한다.
 -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남해군 회계·계약, 건설 업무 담당 부서장
 - 2. 위촉직 위원: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 가.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 나. 건설공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의결사항이 있어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위하여 부실시공 여부 판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발주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부실시공 신고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과 발주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부실시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판정결과의 조치 등)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부실 시공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법 제53조에 따라 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한 벌점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준공표지의 설치) ① 발주부서의 장은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5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해당 공사의 준공표지를 별표에 따라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지하매설공사나 수중공사는 제외한다.

- 1. 건축공사(신축공사에 한함)
- 2. 공원 및 조경공사
- 3. 신설 일반토목공사(도로, 치수, 그 밖에 토목공사)
- 4. 시설물 설치공사

③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준공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공사준공 표지(제17조 관련)

공 사 명	
공사기간	
발주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담당자 : 시설○급 000)
설계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감리자의 성명	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건설기술자의 성명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공사내역	건축물 : 연면적, 층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 토목공사 : 폭, 길이, 면적 또는 공사구간 시설물 : 설치현황, 규격 등
착공 연월일	
준공 연월일	
비 고	

※ 이 표의 규격은 석재 또는 금속으로 40cm×30cm 이상의 직사각형으로 설치하며, 글씨는 음각하여 검은색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이 표지의 규격은 게시하는 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합니다.

[별지 서식]

부실시공 신고서(제5조 관련)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남 , 여)
	전화번호		주 소	
신고공사	사업명		현장 위치	
	공 종		발생일자	년 월 일
부실시공 내 용				
증빙서류				
비 고				

「남해군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2712호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12월 5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이동 명칭 및 관할구역)” 을 “(명칭 및 관할구역)” 으로 한다.

별표의 남 해 읍 32의 남변리의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남 변 리 일 원

별표의 남 해 읍 32의 평리의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 리 일 원

별표의 창 선 면 32의 상신리의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신리 일원, 상죽리 중 상죽리 10-53,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번지

별표의 창 선 면 32의 상죽리의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죽리 10-53,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번지를 제외한
상죽리 일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713호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12월 5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가보훈처장” 을 “국가보훈부장관” 으로 한다.

제6조1항 중 “인물론” 을 “인물록”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을 “보훈명예수당”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족으로서” 를 “유족, 보국수훈자로서” 로, “국가유공자로” 를 “국가
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으로
서” 를 “특수임무유공자로서” 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714호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12월 5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을 “생활이 어려운”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라 한다)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제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남해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제3조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노인세대 :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2. 장애인세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구성원으로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
4. 소년소녀가정 :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5.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인정하는 세대

제9조의 제목 “(지원예산 확보)” 를 “(지원액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확보” 를 “확보 하도록 노력”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715호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12월 5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전단 중 “및 그 미망인과 전몰군경” 을 “등과 그” 로, “군민” 을 “남해군민” 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3호, 제4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종전의 제4호) 중 “참전유공자 미망인이란” 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란” 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군에” 를 “남해군에”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해당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수는 참전유공자·전몰군경 유족, 참전유공자 미망인”을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전몰군경 유족”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수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1.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 다음 각 목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 가. 참전유공자
 -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다. 전몰군경 유족
 - 라. 무공수훈자 유족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 또는 그 유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	-------------

참 전 유 공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보훈번호					
	주 소					
	사망 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수수료 없음
---	-----------

남해군 조례 제2716호

남해군 희망울타리 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희망울타리 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12월 5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희망울타리 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남해군 희망울타리 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717호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12월 5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2023년 12월 31일” 을 “2028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718호

남해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12월 5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현장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토요일을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 감염병의 확산 또는 재난상황 발생 등의 사유로 민원실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법 제28조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업무에 대하여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719호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12월 5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저수지관리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군 저수지의 원활한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남해군수가 관리하는 저수지를 말한다.
2. “저수지관리자”란 법 제18조에 따른 저수지 관리 보조를 위하여 제3조에 따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남해군민 중에서 저수지당 1명의 저수지관리자를 위촉할 수 있다.

1.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사람(이하 “수혜자”라 한다)
2. 위촉되려는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3. 상시 저수지 수문의 개폐가 가능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저수지관리자의 위촉이 필요한 마을 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저수지관리자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추천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 추천인 및 위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임무) 저수지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수혜자가 농업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경우 저수지 수문 개폐
- 2. 저수지 수문 진입로 및 제방 상부의 풀베기
- 3. 저수지 붕괴위험 예비관찰
- 4. 그 밖에 군수가 법 제18조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보조

제5조(임기) 저수지관리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해촉) ① 군수는 저수지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수지관리자를 해촉할 수 있다.

- 1. 전출, 질병 등의 사유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 수행을 태만히 한 경우
-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4.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 5. 그 밖에 군수가 저수지관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저수지관리자를 해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저수지관리자가 될 수 없다.

-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이장
- 2.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마을안전 지킴이

제8조(경비 지원) ① 군수는 저수지관리자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수지관리자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해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지원 신청) 제8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저수지관리자는 별지 제 2호서식의 저수지관리자 수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군수는 매년 저수지관리자의 자질과 활동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해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연번 40란 다음에 4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저수지관리자 위촉 및 경비 지원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8조	건설교통과
----	-------------------	---------------------------------	-------

[별지 제1호서식]

저수지관리자 추천서

추천받은 사람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마 을 명				
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				
저수지명	소 재 지		수혜면적	비 고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저수지관리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마을명 :

직 위 : 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추천받은사람)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저수지관리자 수당 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수지관리자 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첨부서류 · 통장사본

남해군 조례 제2720호

남해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12월 5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대수” 란 20대 이상 50대 미만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721호

남해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12월 5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을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군수” 를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6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감액할 수 있다.

- 1.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감액
- 2.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30감액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명한다” 를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을 “ 「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① 군수는 영 제4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기간은 최대 5개월까지로 한다.

- 1.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취수량이 평균보다 많이 부과된 경우
 - 2. 옥내 급수설비(지하수 계량기 이후에 연결된 급수관,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의 누수로 누수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 이 경우 감면 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치에서 감면 받은 사실이 없어야한다.
 -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공회전 또는 누수 기간 중 월 취수량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한 평균 취수량(직전 3개월 동안을 말한다)을 뺀 취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대상자,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하여 남해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전산용2) ” 을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7일

구분 시간계측기(유량계) 공회전 옥내 급수설비 누수 기타

신청자

성명
(법인명)

관리번호

생년월일
(법인번호)

(남/여)

전화번호
(핸드폰)

주소

신청내용

지하수시설
주소

지하수시설
용도

감면기간

감면사유

「남해군 지하수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 첨부서류 》

- 시간계측기 공회전 또는 옥내 급수설비 누수 감면 신청 시
 - 1) 시간계측기 수리, 구매 확인서 또는 누수공사 확인서 1부
 - 2) 시공사진(전·중·후) 각 1매
- 기타 감면 신청 시 : 입증자료 1부

남해군 조례 제2722호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12월 5일

남 해 군 수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연구활동비” 를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를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제6조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한다.
- ④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의장은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 연구용역 결과물을 남해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남해군의회의 규칙 제43호

남해군의회의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남해군의회의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의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2023년 12월 5일

남해군의회의장

남해군의회의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남해군의회의 운영 및 집행기관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내실화 및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남해군의회의 의원간담회(이하 “간담회” 라 한다)는 남해군의회의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3조(종류) ① 간담회는 정기 간담회와 수시 간담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간담회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개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 일정을 정할 수 있다.

③ 수시 간담회는 재적의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담회 개최 3일전까지 소집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의장이 즉시 간담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하며,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하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주재한다.

② 의원이 부득이하게 간담회에 참석 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필요한 경우, 간담회 주제별로 나누어 각 위원회별로 회의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배석 및 발언자) ①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은 의회사무과장이 한다. 다만,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별 담당 팀장 및 전문위원이 할 수 있다.

② 군수, 부군수, 국장,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담회에는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 정책지원팀장, 간담회 담당자가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남해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간담회 자료에 대하여 토의사항이 있는 경우 발언 기회를 줄 수 있다.

제6조(토의안건) 간담회에서의 토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
2. 민원사항 등 주민의 여론 사항
3. 의원 상호간의 의견·정보교환 및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
4. 의회 제출 각종의안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
5. 의회 및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 의결사항
7. 그 밖에 의장이 의원 상호간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보충설명) 의안에 관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발언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견결정 및 효력)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회의 의견을 결정한다.
 ② 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9조(간사 및 기록) ① 간담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된다.
 ② 간사는 간담회의 안건목록과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타 시·군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의장은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고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타 시·군 의회와의 간담회를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3-147호

남해군관리계획(남해대학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7번지 및 남변리 162번지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된 군관리계획(남해대학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우리군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1월 23일

남 해 군 수

- 1.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 참조
- 2. 관계도서 : 게재생략

[붙임]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군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도립남해 전문대학	대학	남해읍 북변리	73,552	감) 6,657	66,895	경고 제104 (1995.05.12.)	

2)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도립남해 전문대학	○면적 변경 : 73,552㎡ → 66,895㎡ (감 6,657㎡) ※ 변경세부내용 ▶ 기정 면적오차 정정 - A:73,552㎡ → 68,419㎡(감 5,133㎡) ▶ 학교 경계 변경 - A:68,419㎡ → 66,895㎡(감 1,524㎡) ※ 증 657㎡ + 감 2,181㎡ = ± 2,838㎡	○ 편입토지의 지적 등록사항을 반영하여 면적오차 정정 ○ 남해대학(경상남도) 소유 학교용지의 지적선 및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군계획시설(학교) 변경

나.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조서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66,895	100.0	
교육연구시설용지	31,376	46.9	
운동시설용지	13,324	19.9	
도로용지	4,572	6.8	
녹지용지	17,623	26.4	

2) 건축계획

■ 총괄표

구분	대지면적 (㎡)	건폐율		용적률		높이	
		현황	계획(법정)	현황	계획(법정)	현황	계획(법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41,601	16.1%	60%이하	46.5%	250%이하	4층이하	제한없음
자연녹지지역	25,294	14.4%	20%이하	38.4%	100%이하	4층이하	제한없음

■ 건축배치계획

구분	연번	시설명	용도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 연면적 (㎡)	높이 (지하/지상)	비고
교육 연구 시설 용지	1	대학본부	교육기본시설	1,169.46	4,812.08	4,196.88	1/4	현황
	2	사회과학관	교육기본시설	1,095.63	3,770.51	3,707.61	1/4	현황
	3	공학관	교육기본시설	1,012.32	4,121.20	3,995.40	1/4	현황
	4	조리과학관	교육기본시설	1,096.40	3,232.10	3,232.10	0/3	현황
	5	학생회관	교육기본시설	647.81	1,546.41	1,447.91	1/3	현황
	6	한울관	지원시설 (남자기숙사)	845.53	3,054.39	2,455.26	1/3	현황
	7	송죽관	부속시설 (교직원 숙소)	458.07	924.96	867.43	1/2	현황
	8	다솜관	지원시설 (여자기숙사)	722.92	2,490.80	2,108.26	1/3	현황
	9	경남항공 교육원	교육기본시설 (항공정비실습동)	1,176.33	2,283.53	2,283.53	0/3	현황
	10	지역산업기술 교육센터	교육기본시설 (항공특수 용접실습동)	258.00	258.00	258.00	0/1	현황
	11	야외조경 실습동	지원시설	41.44	41.44	41.44	0/1	현황
	12	유리온실	지원시설	150.52	150.52	150.52	0/1	현황
	13	정보문화센터	교육기본시설 (도서관)	697.42	1,559.40	1,494.60	1/3	신축
	14	기숙사	지원시설 (학생기숙사)	972.81	2,842.75	2,842.75	0/4	신축
합계				10,344.66	31,088.09	29,081.69	-	-

남해군 고시 제2023-15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대지포천(지방하천)
2. 성 명 : 손영0
3.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00
4. 점용목적 : 배수관로 매설
5. 점용위치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781
6. 점용면적 : 7㎡
7. 점용기간 : 2023. 11. 24. ~ 2027. 12. 31.

남해군 고시 제2023-152호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1. 29.

남 해 군 수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615,945,415	624,468,418	△8,523,003	△1.36%
일 반 회 계	538,102,976	546,043,366	△7,940,390	△1.45%
특 별 회 계	77,842,439	78,425,052	△582,613	△0.74%
상수도특별회계	21,377,074	20,640,290	736,784	3.57%
청사건립특별회계	20,411,331	20,031,331	380,000	1.9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59,897	768,092	△8,195	△1.0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35,883	235,883	0	0.00%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35,058,254	36,749,456	△1,691,202	△4.60%

□ 세입예산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538,102,976	546,043,366	△7,940,390	△1.45%
지 방 세 수 입	29,071,166	29,071,166	-	0.00%
지방세	29,071,166	29,071,166	-	0.00%
세 외 수 입	30,939,864	21,415,880	9,523,984	44.47%
경상적세외수입	12,661,509	11,456,249	1,205,260	10.52%
임시적세외수입	17,283,604	9,419,828	7,863,776	83.48%
지방행정제제·부과금	994,751	539,803	454,948	84.28%
지방교부세	213,917,698	248,887,000	△34,969,302	△14.05%
조정교부금등	29,512,168	24,474,154	5,038,014	20.59%
보조금	189,971,136	191,541,483	△1,570,347	△0.82%
국고보조금등	142,042,542	144,049,336	△2,006,794	△1.39%
도비보조금등	47,928,594	47,492,147	436,447	0.9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4,690,944	30,653,683	14,037,261	45.79%
보전수입등	26,021,304	29,484,043	△3,462,739	△11.74%
내부거래	18,669,640	1,169,640	17,500,000	1496.19%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77,842,439	78,425,052	△582,613	△0.74%
세외수입	5,289,334	5,190,480	98,854	1.90%
경상적세외수입	4,851,821	4,835,800	16,021	0.33%
임시적세외수입	251,582	179,480	72,102	40.17%
지방행정제제·부과금	185,931	175,200	10,731	6.13%
지방교부세	952,000	-	952,000	순증
조정교부금등	500,000	500,000	-	0.00%
보조금	18,105,100	19,603,100	△1,498,000	△7.64%
국고보조금등	8,089,927	8,689,927	△600,000	△6.90%
도비보조금등	10,015,173	10,913,173	△898,000	△8.2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2,996,005	53,131,472	△135,467	△0.25%
보전수입등	3,042,397	3,042,397	-	0.00%
내부거래	49,953,608	50,089,075	△135,467	△0.27%

□ 세출예산

○ 일반회계(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고
합 계	538,102,976	546,043,366	△7,940,390	△1.45%
인 건 비	63,501,015	66,293,025	△2,792,010	△4.21%
물 건 비	34,206,275	32,954,118	1,252,157	3.80%
경 상 이 전	197,389,107	201,092,579	△3,703,472	△1.84%
자 본 지 출	178,711,926	177,196,204	1,515,722	0.86%
용 자 및 출 자	42,000	42,000	-	0.00%
내 부 거 래	51,714,789	52,191,216	△476,427	△0.91%
예 비 비 및 기 타	12,537,864	16,274,224	△3,736,360	△22.96%

○ 특별회계(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고
합 계	77,842,439	78,425,052	△582,613	△0.74%
인 건 비	902,216	933,499	△31,283	△3.35%
물 건 비	7,079,003	7,228,863	△149,860	△2.07%
경 상 이 전	8,746,038	8,892,008	△145,970	△1.64%
자 본 지 출	35,537,102	35,818,321	△281,219	△0.79%
용 자 및 출 자	9,204	10,383	△1,179	△11.36%
내 부 거 래	25,464,328	25,464,328	-	0.00%
예 비 비 및 기 타	104,548	77,650	26,898	34.64%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3-1492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동천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우리 군에서 시행 중인 「동천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주민(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1일

남 해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해군 삼동면 양화금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급경사지 정비공사
 - 명 칭 : 동천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 다. 사업 량 : 급경사지 정비 L=575m
- 라.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세목조서 : 붙임
- 바.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열람장소 비치

2. 열람일시 및 장소 : 공고일부터 14일간, 남해군 건설교통과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3. 11. 21. ~ 12. 6. (1일간)

나. 제출방법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로 의견서 제출

다. 기타 상세하게 문의하고 싶으신 분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055-860-3314, 33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 지 조 서(전체)

구 분	주 소	지 번		지 목	면 적 (㎡)		주 유 자 소	성 명	비 고
		분할전	분할후		대장면적	편입면적			
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190-4		임	143	143		남해군	
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190-3		도	299	299		남해군	
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187-1		도	148	148		국토교통부	
4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187-2		도	595	595		남해군	
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189-1		도	1,214	1,2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보곡3길 40, 106동 2404호(울산온양서비스타워스)	김0영	13분의2
6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196-1	산 196-15	임	16,507	204	서울 노원구 상계동 143-1	김0철	
7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196-6		도	2,305	2,305		남해군	
8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196-10		도	626	626		남해군	
9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196-11		도	115	115		남해군	
10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196-7		도	1,469	1,469	삼동면 동천리 312	박0호	
1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196-8		도	118	118	삼동면 동천리 312	박0호	
1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91-5		도	77	77		남해군	
1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93-6		도	31	31		남해군	
14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93-9		도	28	28	경상북도 상주시 성동2길 45-16 (성동동)	김0래	
1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93-4		답	43	4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양화길로 132	김0모	
16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95-2		도	79	79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315	김0상	
17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93-8		도	1	1	경상북도 상주시 성동2길 45-16 (성동동)	김0래	
18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93-7		도	22	22		남해군	
19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93-2		도	96	96		남해군	
20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303-5		도	198	198		남해군	
2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303-10		도	211	211	삼동면 동천리 266	빈0오외5인	
2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303-8		도	86	86	삼동면 동천리 266	빈0오외5인	
2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303-1	산 303-14	임	20,312	73		남해군	
24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307-14		도	72	72	삼동면 동천리 330	문0암	
2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307-7		도	2,281	2,281		남해군	
26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307-9	산 307-16	임	8,511	1,161		남해군	
27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307-12		도	790	790		남해군	
28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291-2		도	198	198		남해군	
29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291-4		도	142	142		남해군	
30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291-6		도	228	228		남해군	
3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291-8		임	365	365		남해군	
3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295-3		도	298	298		남해군	
합계					57,608	13,716			

남해군 공고 제2023-1498호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도시계획도로 소로2-16,19호 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열람 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1977-127호(1977.1.27.)로 최초 결정 고시된 군계획시설(교통 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소로2-16,19호(매일유업~술밭냉열)개설사업』의 실시계획 사항을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4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위치 :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492-12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사업
- 명칭 : 도시계획도로 소로2-16,19호(매일유업~술밭냉열) 개설사업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규모합계 : B=8m L=280m

구분	도로명	폭(m)	연장(m)	비고
1	도시계획도로 소로2-16호	8	225	
2	도시계획도로 소로2-19호	8	5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남해군수
- 주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이내
- 준공예정일 : 2024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7. 관계도서 : 실음 생략(열람장소 비치)

8. 열람장소 및 기간

- 장소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5)
-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대장 면적 (㎡)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소로2- 16	소로2- 19						
합계				3,509	1,841	495	2,336					
1	남해읍 북변리	479-12	대	3	3		3	남해군				
2	"	480-3	대	70	70		70	남해군				
3	"	481-3	대	126	126		126	남해군				
4,17	"	615	도	1,230	37	20	57	국 (국토교통부)				
5	"	484-2	대	30	30		30	남해군				
6	"	484-1	대	53	53		53	남해군				
7	"	483-1	대	96	96		96	남해군				
8	"	487-1	대	188	188		188	남해군				
9	"	493-13	답	332	332		332	남해군				
10,15	"	492-12	답	409	350	59	409	남해군				
11,16	"	491-1	답	35	8	27	35	남해군				
12	"	466-11	답	47	47		47	남해군				
13	"	466-6	답	232	232		232	남해군				
14	"	467-6	답	269	269		269	남해군				
18	"	490-12	대	2		2	2	남해군				
19	"	490	답	269		269	269	남해군				
20	"	490-13	답	3		3	3	남해군				
21	"	490-14	답	18		18	18	남해군				
22	"	474-7	답	97		97	97	남해군				

남해군 공고 제2023-1511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군도7호선(소량교) 재가설 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2. 8.(금)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4일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로법」에 따른 교량 재가설공사
- 명칭 : 군도7호선 소량교 재가설공사

3. 수용재결 신청대상 : 토지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면)	리	지번(당초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상주면	양아리	743-3	답	20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872	김0완				
상주면	양아리	762-3	전	4	사 정	박0준				
합계		2필지		24㎡		2명				

4. 열람장소 : 남해군청 게시판

5.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3. 11. 24. ~ 2023. 12. 8.(14일간)

6. 의견서 제출처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 055-860-3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3-1512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상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2. 8.(금)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4일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로법」에 따른 급경사지 정비공사
- 명칭 : 상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3. 수용재결 신청대상 : 토지

소 재 지			지목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동(면)	리	지번 (당초지번)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종류	
남면	상가리	산91-1	임	11	사 정	김0기				
합계		1필지		11㎡		1명				

4. 열람장소 : 남해군청 게시판

5.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3. 11. 24. ~ 2023. 12. 8.(14일간)

6. 의견서 제출처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 055-860-3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3 -1513호

국도19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국도19호선 두모마을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의제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하오니,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4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업 명 : 두모마을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 위 치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51-3번지 일원
- 사업 내용 : 건축면적 370.29㎡, 시설면적 371.29㎡, 연면적 488.08㎡
-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
- 사업 기 간 : 2023. 12. ~ 2024. 1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휴게시설(두모마을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도로구역 변경

3.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 열람 장소 비치

4. 공고기간 : 2023. 11. 24. ~ 2023. 12. 11.

5.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 출 기 간 : 공고기간 내
- 제 출 장 소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 제 출 방 법 :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우편, 직접방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055-860-3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소	
계				33,896	2,972			
1	상주면 양아리	91-2	도로	56	56	국(국토교통부)		
2	상주면 양아리	94-1	답	306	306	남해군		
3	상주면 양아리	94-2	답	397	397	남해군		
4	상주면 양아리	95-2	답	131	131	남해군		
5	상주면 양아리	95-6	답	4	4	남해군		
6	상주면 양아리	95-8	도로	1,207	1,207	국(국토교통부)		
7	상주면 양아리	1945	하천	23,144	633	국(환경부)		
8	상주면 양아리	산47-5	도로	40	40	국(국토교통부)		
9	상주면 양아리	산48-2	도로	198	198	국(국토교통부)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84	8~20	주간선 도로	26,308	남해읍 입현리 1639-7	미조면 미조리 530	일반 도로	-	경상남도 고시 제2009-63호 (2009.02.05.)	국도19호 (국도77호 중복)
변경	소로	2	84	8~20	주간선 도로	26,185	남해읍 입현리 1639-7	미조면 미조리 530	일반 도로	-		국도19호 (국도77호 중복)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84호선	소로2-84호선	○ 도로 선형변경 - L=26,308m→26,185m	○ 지난 2020년 국도19호선 남해 양아 (두모)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도로 선형변경을 반영하고자 급회 군계획시설 도로를 변경하고자 함.

남해군 공고 제2023-1542호

공시송달 공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같은법 제37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 제15조의4(공표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공표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남 해 군 수

1. 공고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시설 행정처분 공표결정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 4

3. 공고기간 : 2023. 12. 05. ~ 12. 20.[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5. 공시송달 내용

대상기관	대표자	기관주소	요지	사유
효** 재가복지센터	조*옥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	행정처분에 따른 공표 (업무정지 88일)	이사감

6. 공고사유 : 이사감 등으로 송달불가

7. 문 의 : 남해군청 주민행복과(☎055-860-3833)